

의안번호	2206583
의 퇴 인	강선우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3.
추계번호	24C6011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5조(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‘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방안’을 포함하도록 규정 ※ 이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포함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안 제5조의2에 명시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2년 주기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바탕으로 5년 주기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
 -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는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과 종사자의 고용,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
 - 과거에는 수요공급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일시에 수행하였으나, 2021년부터는 수요와 공급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음
 - 보건복지부는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4억원,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에 약 1억 8천만원을 투입

-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「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(2024~2028)」에는 공급자 성장 지원, 공급혁신 기반조성 등을 통한 공급 확대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확대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,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일부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치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공급 확대 방안과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향후 수립될 차기 기본계획은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, 해당 시점에 정부가 수립할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그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